

##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관한 지침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제 7장 입학전형 지원서류의 유사도 검증기준 및 처리절차	제 7장 입학전형 지원서류의 검증기준 및 처리절차	신규 조항 신설로 제목 변경
신설	제23조(서류의 허위작성, 대필, 표절에 대한 처리) 지원자의 입학 전형 지원서류가 위 유사도 검증결과 이외에도 허위작성, 대필, 표절 등 평가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서류로 판정된 경우에는 입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하며, 전형 종료 후에도 입학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한다.	신규 조항 신설
제23조(회피 제척 규정 및 방법) ① 입학 전형 지원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입학 전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. ② 회피 제척 대상 선정 및 방법은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침을 따른다.	제24조(회피 제척 규정 및 방법) ① 입학 전형 지원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입학 전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. ② 회피 제척 대상 선정 및 방법은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침을 따른다.	신규 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 변경
제24조(회피 제척 위반 사례 처리 및 절차) ① 회피 제척 규정 위반 사례 발생 시 즉각 해당 전형 참여자를 입학 전형 업무에서 제외시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한다. ②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회피 제척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감사·심의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내부 조치, 입학위원회 재심의, 교무위원회 상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. ③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회피 제척 규정을 위반한 전형 참여자를 심사하여 해당 전형 참여자에 대한 후속 조치(경고, 징계 등)를 관련 부서에 요청한다.	제25조(회피 제척 위반 사례 처리 및 절차) ① 회피 제척 규정 위반 사례 발생 시 즉각 해당 전형 참여자를 입학 전형 업무에서 제외시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한다. ②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회피 제척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감사·심의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내부 조치, 입학위원회 재심의, 교무위원회 상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. ③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회피 제척 규정을 위반한 전형 참여자를 심사하여 해당 전형 참여자에 대한 후속 조치(경고, 징계 등)를 관련 부서에 요청한다.	신규 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 변경